



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2026.06.30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입니다.

저희 그룹은 기업상사 분쟁, 경영권 분쟁, 회생·도산, 금융 분쟁 및 기업형사사건 등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최고의 전문팀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6월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주요 판결** : 2026년 5월 판례공보에 수록된 기업·금융분쟁 분야 대법원 주요 판결
- **이슈 소개** : 김동규 변호사의 '회생·파산 이야기' (제6편)
- **승소 사례 소개** : 기업금·융분쟁그룹의 최근 승소사례 안내

본 뉴스레터가 귀하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6년도 5월 판례공보 중 기업·금융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소개

-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7 판결 (key 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 위한 가등기의 효력, 변론종결 후 승계인)**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원고)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해 경로되었던 가등기 및 그에 따른 본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변론종결 전에 가등기를 마쳤다가 변론종결 후에 본등기를 경로한 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공유물분할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 (key word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투자중개업자,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당사자, 착오 취소, 부당이득반환, 선의의 수익자, 현존이익 추정 반복)**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의 상대방이지만,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 전액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 신탁원본에 납입되도록 하였다면 그가 취득한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반복되므로,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다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인정)
- ▶ **대법원 2026. 04. 0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key word : 특별이해관계인, 이사 보수한도, 의결권 제한, 정족수, 주주총회, 결의취소)**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보수한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 주주 겸 이사인 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가 보유한 주식은 상법 제371조 제2항의 '출석 주주의 의결권 수'는 물론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법 제368조 제1항의 '발행주식 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26. 4. 3. 자 2026모510 결정 (key word : 항소이유서 미제출, 직권조사사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형법 제3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소심 계속 중 별건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새롭게 발생하였다면, 항소법원은 이를 직권조사사유로 삼아 항소기각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의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 이슈소개

▶ **김동규 변호사가 들려드리는 희생·파산 이야기(6)**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 도산팀 김동규 변호사입니다. 2003년부터 2024년까지 20여 년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회생 및 파산 사건을 담당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 한해 매달 도산절차를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하였는데,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이야기들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6호 : 희생채권 신고 및 조사, 그리고 후속조치

3. 승소사례 소개

▶ **별건 신탁사업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신탁회사에게 귀속된 공사지연 손해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별건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시공사의 신탁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에서 투자심사실 이사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관련구성원

최창영

대표변호사

02-316-1947

cychoi@shinkim.com

이원

변호사

02-316-4406

wlee@shinkim.com

문희춘

변호사

02-316-4051

hcmoon@shinkim.com

최복기

변호사

02-316-1613

bgchoi@shinkim.com

이숙미

변호사

02-316-4016

smlee@shinkim.com